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걸 의원 (대표)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82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18년 4월 17일

발 의 자 : 김희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주찬식, 김진영, 이종필,
김동율, 문종철, 김기대,
남재경, 유 용, 송재형,
이혜경, 이현찬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, 제71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를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증가 상한 금액의 규정에 대해 「도로법 시행령」의 변경 사항을 반영 (안 제6조 제1항)
-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 감면 시, 기준 금액의 감면 전·후가 불명확하여 감면 후로 명확화 함
 - 점용료 증가 상한 금액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함

나. 소액 점용료 부과 기준을 5,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, 법 제68조 제3호(전기, 통신, 가스 공급 등)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도로법 시행령의 변경 사항 반영 (안 제9조 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0퍼센트”를 “100분의 10”으로, “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”를 “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 제1항 중 “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,000원 미만”을 “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”으로 하고 단서 조항인 “다만, 법 제 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.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6조(점용료의 조정) ① 도로를 계속 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<u>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제9조(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)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<u>5,000원</u>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<u>다만, 법 제68 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.</u></p> | <p>제6조(점용료의 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10</u> ----- ----- <u>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제9조(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) ① ----- ----- <u>1만원</u>----- ----- . <u>(삭제)</u></p> |